

1. 예 산 총 칙

제1조 :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총 계	846,132,388	25,383,850
일반회계	744,783,408	22,343,500
특별회계	101,348,980	3,040,350
기타특별회계	30,128,563	903,740
주택사업 특별회계	2,000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3,334,654	100,000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198,000	5,940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8,671,880	260,150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329,418	69,880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	4,832,000	144,960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	1,368,611	41,050
수질개선 특별회계	6,392,000	191,760
기반시설 특별회계	3,000,000	90,000
공기업 특별회계	71,220,417	2,136,610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8,987,014	1,469,610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106,250	33,190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1,127,153	633,810

제2조 :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 2008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다.

제4조 : 2008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8,000백만원으로 한다.

제5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8,982,116천원으로 한다.